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법제사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4일, 박상혁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6.) 상정 · 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 22.)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 상정 · 축조심사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 상정 ·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7. 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상혁의원)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5.)로  
생략

### 4. 대체토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5.)로  
생략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